

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미경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045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6년 2월 25일

발 의 자 : 권미경, 김종욱, 김진철,
김현아, 맹진영, 박양숙,
신건택, 오경환, 이숙자,
최호정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몰 규정 삭제를 통하여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일몰규정 삭제
(부칙 제5664호 제2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<제5664호, 2014.3.20.> 제2조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부칙 <제5664호, 2014.3.20.> 제1조(시행일) 생략 제2조(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) | 부칙 <제5664호, 2014.3.20.> 제1조(시행일) 생략 <삭 제> |
| <u>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</u> <u>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</u> <u>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</u> <u>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</u> | |

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권 미 경